

대학원 보건학과 운영 내규

개정 : 2025. 1. 22. (제5조 일부 개정)

개정 : 2025. 12. 15. (조문 체계 정비 및 일부 내용 개정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보건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(적용범위와 효력)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석사, 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장 입학관리

제3조(우수학생의 유치) 보건학과 소속 교수들은 보건학과 학위과정(석사, 박사, 통합)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.

제3장 논문지도

제4조(지도교수의 선정)

- ① 학생의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 교수를 신청하고 논문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최종 주임교수가 승인한다.
- ② 논문지도 교수 변경 시는 적합한 사유에 따라 변경 전후 지도교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최종 주임교수가 승인한다.

제4장 자격시험

제5조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- ① 보건학과의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각 전공에 따라 진행한다.
- ② 보건행정학 전공 석사과정은 본 과정 입학 후 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

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(게재 예정 포함)한 경우, 종합학력시험 2과목을 면제한다. 박사과정은 본 과정 입학 후 심사 신청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 2편 이상을 게재(게재 예정 포함)하거나 SCIE급 이상의 국제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(게재 예정 포함)한 경우, 종합학력시험 4과목을 면제한다. 단, 이 중 최소 1편은 지도교수와 공동 저자여야 한다.

- ③ 보건학 전공의 경우 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 시(단, 이 중 최소 한편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.) 4과목 면제
- ④ 보건복지학 전공의 경우 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예정 증명 시 4과목을 면제한다(단, 이 중 최소 한편은 지도교수와 공동 저자로 하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).
- ⑤ 보건위생학 전공의 경우 종합학력 면제기준 없음. 반드시 종합학력시험을 응시한다.
- ⑥ 원예치료학 전공의 경우 석사 학위과정은 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SCI급 학술지,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시 (교신저자, 제1저자 포함) 2과목을 면제한다. 박사 학위과정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 제출 시 4과목 면제(단, 이 중 최소 한편은 지도교수와 공동 저자로 하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.)
- ⑦ 물리치료학 전공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 또는 SCIE 급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시 4과목 면제(단, 석사과정의 경우 2과목 면제하며, 석/박사 모두 본인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).
- ⑧ 구강보건, 치위생학 전공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또는 SCIE 급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시(지도교수와 공동 저자로 하되,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.) 4과목 면제(단, 석사과정의 경우 2과목 면제)

제6조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

- ① 석사학위 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이상으로 한다.
- ② 박사학위 과정 및 통합 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.
- ③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전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

있다.

④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.

단,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⑤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, 합격 기준은 각 교과목당 80점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외국어시험 과목)

① 내국인 학생은 영어, 외국인 학생은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 학생의 영어 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만 가능하다.

제5장 학위과정

제8조(학위과정) 본 학과는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한다.

제9조(졸업)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 통합 과정을 포함한 모든 학위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고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
제10조(석사학위 과정 선택) 본 학과의 석사학위 과정은 학위논문 제출에 의한 학위 취득만 허용하며, 학위작품 또는 연구논문에 의한 학위 취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학위과정 취득 자격요건) 각 학위과정의 취득 자격요건은 대학원 학칙 및 그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12조(학위논문의 심사) 학위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그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13조(논문심사위원) 논문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그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4조(의사결정 방식)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교수 1/2 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 과 참석 교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칙(2026. 3. 1.)

제1조(시행) 이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)

- ① 제2조(적용범위와 효력), 제3조(우수학생의 유치), 제4장(자격시험)에 관한 사항 중 박사과정에 관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, 석사과정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② 제5조(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) 중 원예치료학전공 석사과정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③ 제5조(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) 중 보건행정전공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④ 제5조(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) 중 보건행정전공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자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